## 2023『하끝 세법(1쇄)』추록 및 정오표

2023 『하끝 세법』(1쇄)의 추록 및 정오표를 올립니다. 세법 시행령이 당초 안과 비교하여 일부 수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고, 일부 오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일부 의미가 바뀌지 않는 단순한 자구수정사항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페이지	수정전	수정후
p11	(8) 수용등 경우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제4항(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따른 사업시행 자의 매도청구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p22	② 영유아~포함)	②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액상 형태의 분유 포함) 개정 (일몰기한 삭제)
р36	(사) 매출에누리를 ~	(사) 매출에누리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해당 금액을 판매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 보고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개정
p41	① 의무발급사업자: ~개인사업자(이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 개정 (종전: 2022.7.1.부터는 2억원, 2023.7.1.부터는 1억원. 이하 같음)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최초로 해당하는 경우부터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인 것으로 본다. 개정 (2023.7.1.부터 시행)	① 의무발급사업자: ~ 개인사업자(그 이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 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개인사업자 포함. 이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함)는 ~ 개정 (8천만원은 2024,7,1,부터 시행하나, 그 외의 개정사항은 종전의 1억원을 기준으로 2023,7,1,부터 시행함. 이하 같음)
	④ 의무발급시기 : 전자~해의 <u>다음</u>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전자~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부터 시행, ~)	④ 의무발급시기: 전자~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의 다음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1억원 기준으로 2023.7.1.부터 시행~)
	⑤ 통지의무 : 관할 ~ 발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1개월 ~ 발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1개월 ~	⑤ 통지의무 : 관할~ 발급해야 하는 날이 시작되기       1개월 ~ 발급해야 하는 날이 시작되기         기 1개월 ~
p44	⑤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	⑤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p55	⑤ 제조업(과자~제분업·양복점업~	⑤ 제조업(과자~제분업ㆍ떡방앗간ㆍ양복점업 ~
p140	* 외국자회사의 요건 : ~ 보유하고 있는 외국 법인	* 외국자회사의 요건: ~ 보유(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 출자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때부터 해당 주식등을 보유 한 것으로 본다)하고 있는 외국법인
p143	* '중소기업 ~ 인건비(퇴직급여 포함)가 ~	* '중소기업 ~ 인건비가 ~
p153	<ul><li>◎ 동창회~·새마을금고, 정치자~</li></ul>	<ul><li>◎ 동창회~·새마을금고(단, 사랑의 좀도리운동은 일반기부금), 정치자금~</li></ul>
p157	② 보험회사 : ~	② 보험회사 :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이자·할인액 및 보험료등으로 서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은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 또는 손비로 계 상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함
p158	취득원가—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sup>*2)</sup>	매입가액-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2)
p164	③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공익법인(舊법정 ·지정기부금 해당 법인)에게	③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공익법인(특례·일반기부금 해당 법인)에게
p188	내국법인이 ~ 6개월 이상(적격구조조정 중 적 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 자에 따라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 에는 그 승계받기 전 법인이 취득한 때를 기준 으로 판단한다) 계속하여 보유하고 ~	내국법인이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때부터 해당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하고 ~
	③ 공제한도금액을 ~ 않는다. <u>이 경우 ~</u>	③ 공제한도금액을 ~않는다. 이 경우 해당 외국법인세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령 94 ⓑ).

페이지	수정전	수정후	
p204	(개) 수익자가 ~것[목적신탁(수익자가 없는 특정 의 목적을 위한 신탁)은 제외]. 다만, ~ 개정	⑺ 수익자가 ∼것. 다만, ∼않는다.	
	2) 위탁자~신탁 : 다음의 <u>어느 하나의 요건을</u> 갖춘 신탁 개정 (종전 : 요건을 모두)	*2) 위탁자~신탁 : 다음의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신탁 <mark>개정</mark> (종전 : 요건을 모두 종	갖춘)
p234	02 ×[각 사업연도 ~100분의 <u>60</u> 으로 한다]	02 ×[각 사업연도 ~100분의 <u>80</u> 으로 한다]	
p296	50 영리내국법인~은 얼마인가? (단, 외국자회 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제외 대 상으로 가정함)	50 영리내국법인~은 얼마인가? (단,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 상으로 가정함)	제외 대
p318	※ 성실신고~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50% ~	※ 성실신고~ 미가입시 업무사용비율금액의 50%~	
p322	① 정치자금기부금, <u>고향사랑기부금</u> 및 특례기 부금: 100% 개정 (2023,3,1,부터 시행)	① 정치자금기부금 및 특례기부금 : 100%	
	③ 고향사랑기부금 : 이월공제 × 개정 ④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이월공제 ×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이월공제 ×	
	③ 인도기준 ~경우와 K-IFRS를 적용하는 배 당소득공제 적용 법인의 예약매출의 경우	③ 인도기준 ~ 경우 <del>와 K—IFRS를 적용하는 배당소득공제 적용 법인의 예약배출의 개정</del>	<del>의 경우</del> 
p324	② 고향사랑~         ③ 특별재난지~         ④ 회비~         ⑤ 법령~	② 특별재난지~     특례기부금       ③ 회비~     4 법령~	
	정치자금(개인) 고향사랑(개인) 특례기부금	정치자금(개인) 특례기부금	
	(기준소득금액-~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특 례기부금)×30% 개정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특례기부금)×30%	
	* 소득금액=기준소득금액-~고향사랑기부 금-특례기부금~ 개정	*소득금액=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특례기부금-우리사 기부금	-주조합
p341	(개) 6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 (라) 친생~	(개 4촌 이내의 혈족 개정 (2023, 3.1.부터 시행, 종전 : 6촌) (나) <u>3촌</u> 이내의 인척 개정 (2023, 3.1.부터 시행, 종전 : 4촌) (다) 배우자(사실혼 포함) (라) 친생~ (마) 본인이「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2023, 3.1.부터 시행)	
p356	③ 미숙아∼(+)전 액×20%=B 개점 ④ 난임∼ (+)전 액× <u>30%</u> =C 개점	③ 미숙아∼(+)전 액×20%=B ④ 난임∼ (+)전 액×30%=C	
р358	⑦ <u>고등교육법 제34~</u>	①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대학수학능력시료) 및 같은 법 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대학입학전형료) 개정	험응시
p361	재해발생일 ~세액 <sup>*1)</sup> (종전 규정의 가산금 포함)×자산상실비율 <sup>*2)~</sup>	재해발생일 ~세액 <sup>*1)</sup> ×자산상실비율 <sup>*2)~</sup>	
p377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	*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의 평가 및 <u>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특례</u> 에 따라 평가한 경우로서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개정	<u></u> 평가의
p420	이 자 8+2=10	이자 8+2=10	
p445	84만원+1,200만원을 초과~	84만원+1,400만원을 초과~	
p470	② 포탈세액 ~ (위의 ①~⑦의 재산가~	② 포탈세액 ~ (위의 ①~⑧의 재산가~	